

공대 학생회칙

- 2020년 6월 20일 개정 -

-통일공대 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및 창의 ICT 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 대학 학생회'라 한다.

(이하 통일공대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개혁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회원간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대학의 진보 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통일공대 소속 각 학부, 학과 학생회로 구성된다.

제4조(기구) 본회는 학생총회, 단대 학생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학년 대표자 회의,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둔다.

제5조(권한)

1항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2항 본회는 회원들의 합의와 동의의 과정에서 사업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학사 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권리)

1항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제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8조(의무)

1항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학생총회

제9조(지위) 학생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구성)

1항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항 학생총회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1조(소집)

- 1항 학생총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2항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장은 즉시 학생총회 소집 공고를 내어야 한다.
- 3항 소집을 할 때는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한다.
(단 전항의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결)

- 1항 학생총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항 총회를 열 수 없을 경우에는 총 투표로 대신한다.

제13조(권한)

- 1항 학생총회는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2항 학생총회는 정(부)학생회장 또는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장 단대학생대표자회의

제14조(지위) 단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는 학생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5조(구성)

- 1항 단학대회는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대 정(부)학생회장, 각과 정(부)학생회장, 각 학부 정(부)학생회장, 각과 학년 대표, 반 대표, 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2항 단학대회의 의장은 본 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6조(소집)

- 1항 정기 단학대회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 2항 임시 단학대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3항 단학대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공고를 내어야 한다.
- 4항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한다. 단, 임시 단학대회는 즉시 소집공고를 내어야 한다.

제17조(의결) 일반안건에 대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단학대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 사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학생대표자회의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1항 학생총회 소집요구권
- 2항 운영위원회 및 각 집행국과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3항 학생회 예산 심의 및 결산 감사권
- 4항 학생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 5항 학교 당국과 공대 학생회 전반에 관한 제정 및 의결권

제19조(탄핵권)

- 1항 단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 2항 단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각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20조(대회 회의록)

- 1항 단학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2항 회의록은 대회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다. 회의록 작성은 본회의 집행국과 대표자가 각각 1부씩 작성하도록 한다.

제21조(위임)

- 1항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은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타인에게 참석 및 발언권을 위임할 수 있다.
- 2항 피위임자의 자격은 해당 학과, 학년이 같아야 하며 재학생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단학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상설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정(부)학생회장과 각 과, 각 학부의 정(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 1항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주 한 번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2항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상설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1항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 2항 단학대회의 소집요구권
- 3항 각 집행국장의 임명 동의권 및 출석 요구권
- 4항 각 집행국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5항 특별기구 구성권
- 6항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 동의권
- 7항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 8항 학교 당국에 대한 발의권
- 9항 학교 당국에 대한 교섭권

제27조(탄핵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각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6장 학년대대표자회의

제28조(지위) 학년대대표자회의는 운영위원회와 함께 단학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상설의 의결기구이다.

제29조(구성) 학년 대표자회의는 정학생회장, 직선으로 선출된 각 학년 정, 부대표 및 각 학부 학년 반 정, 부대표로 구성된다.

제30조(소집)

1항 학년대표자회의는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정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항 학년대표자회의는 학년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의장) 의장과 회의 진행은 정학생회장이 한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1항 학년의 일을 의결한다.

2항 학년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원회와 집행부회의에 반영한다.

3항 학년학생회를 대표한다.

제7장 정(부)학생회장

제33조(지위) 정(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4조(선출)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이며, 본회의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체 회원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 단독 후보일 경우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5조(임기)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학년도 11월 말까지 보장된다.

제36조(신분보장)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일체의 신분이 보장된다.

제37조(업무 및 권한)

1항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2항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학생총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된다.

3항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총회, 단학대회, 총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4항 정(부)학생회장은 각 집행국과 집행국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지닌다.

5항 학생회장은 집행국 업무를 총괄한다.

제38조(전체 투표)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전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집행위원회

제39조(지위)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입각하여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 집행 단위이자 정책 단위이다.

제40조(구성)

1항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당해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여 단학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2항 각 집행국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행국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선출)

1항 집행국장은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은 자 가운데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항 집행국원은 각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42조(특별부서)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국 이외의 집행 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장 학과 및 학부학생회

제43조(구성 및 운영) 학과 및 학부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과 및 학부별 학생회칙 및 학부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10장 선거

제44조(선거) 본회는 정(부)학생회장 선출을 위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의한 선거를 실시한다.

제45조(시기) 매 학년도 정(부)학생회장 선거는 직전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46조(유권자) 본 회에서 실시하는 선거 유권자는 본 회의 회원 모두로 한다.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근거한다.

제48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미리 선거공고를 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후보자는 본 회의 4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후보등록 마감 직전까지 회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50조(당선의 기준)

1항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항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투표의 무효표 수와 기권표 수의 합을 초과하여야 한다.

3항 단독 후보일 경우 50% 이상의 투표율에 50% 이상의 찬성표로 당선이 되며, 이때, 찬성표와 반대표 차이가 전체 투표수의 무효표 수와 기권표 수의 합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51조(재선거)

1항 최다 득표자가 유효투표용지 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2항 투표율이 유권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기간을 연장한다.

3항 투표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유권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4항 당락의 득표수의 차이가 오차의 2배가 되지 않을 경우 3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52조(권한대행)

1항 학생회장 궐위 시 잔임 기간 동안 권한대행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통하여 선출한다.

2항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학생회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학생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3조(선거시행세칙) 선거에 관한 기타세부사항은 통일공대 선거시행 세칙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장 재정

제5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익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제5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생회장의 임기로 한다.

제56조(예산편성)

- 1항 본회의 예산은 사무국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단학대회의 심의를 받는다.
- 2항 예산안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전체 예산안의 10%의 범위에서 경상비를 제출한다.

제57조(결산보고)

- 1항 본회의 결산은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단학대회의 감사를 받는다.
- 2항 매월 말에 사무국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는 결산보고서를 공고한다.
- 3항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사무국은 재정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제12 장 학생회칙개정

제58조(제안)

- 1항 학생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학대회에서 제안한다.
- 2항 학생회칙의 개정안은 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단학대회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공고) 학생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적어도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결)

- 1항 학생회칙 개정안은 단학대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2항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할 때에는 단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62조(공포)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장 비상대책위원회

제63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는 통일공대 선거시행세칙에 마련된 매년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공운위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64조(구성) 구성원은 본회 회칙 63조(정의)에 의해 구성되며 통일공대 정(부)학생회장은 제외한다.

제65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칙 26조(업무 및 권한)에 언급된 운영위원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권한을 갖는다.

제66조(소집과 의결) 본회 회칙 24조(소집)와 25조(의결)와 같은 소집과 의결 절차를 거친다.

제14장 비상대책위원장

제67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뽑힌 위원회의 대표이다.

-공대 동아리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공과대학 및 창의 ICT 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 대학(이하 공대)에 소속된 동아리는 '공대 동아리' 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 1항 공대 동아리의 목적은 공학인이 관심가질 수 있는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공학인 상호간의 발전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2항 공대 동아리는 자신들의 활동을 공학인 전체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제2장 등록

제3조(재등록 및 신규 등록 요건)

- 1항 동아리 회칙 1부(단, 동아리 전 회원의 의사로 회칙이 불필요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와 동아리 활동 강령 1부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2항 20인 이상이 학생회실 방문 서명을 한 회원명부 1부(단, 동아리 회원은 3개 학과, 학부 이상에서 학과(부)당 5명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하나의 학과·학부 인원이 동아리 전체 인원의 70%를 넘긴 명부는 효력이 없는 명부로 취급한다. 또한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및 도시시스템공학과는 모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로 취급한다.(공과대학 학생회실에 방문하여 학생증 확인 후 서명)
- 3항 전 학기 동아리 활동 내용, 동아리 등록 목적, 동아리 소개서 및 동아리 활동계획서 각 1부.(단, 전 학기 동아리 활동내용은 재등록 동아리에 한한다.)

제4조(신규 동아리 등록 자격)

신규 동아리 등록 대상은 제2장 5조에 의하여 가등록된 동아리들 중 한 학기 이상의 활동을 지속한 동아리들로 한다.

제5조(의결과 완료)

- 1항 등록은 매 학기 초에 하며, 각 동아리는 등록 기간에 제2장 1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통일공대 학생회에 등록한다.
- 2항 등록 마감과 함께 학생회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며 공대운영위원회에서 각 동아리가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 가진 후 의결한다.
- 3항 공대운영위원회에서 등록이 확정된 동아리는 본회 회장이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함께 등록이 완료된다.

제6조(등록 기간)

- 1항 공고는 1학기 등록은 3월, 2학기 등록은 9월까지 하며 등록공고 시점으로부터 최소 일주일을 보장한다. 공대운영위원회에서 재등록과 신규 등록 및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 2항 동아리의 활동 기간은 등록일부터 다음 학기 등록 완료일로 하며,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면 동아리 등록기간에 제2장 제3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대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가등록)

- 1항 공대 가등록 동아리는 제2장 1조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갖추고 공운위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된다.
- 2항 공대 가등록 동아리는 자치공간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단, 제3장 1조 3항에 의해 공운위의 의결을 통해 가등록 동아리에게 자치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 3항 공대 가등록 동아리 인준은 공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4항 1학기 이상 활동한 가등록 동아리는 정식 공대 동아리 승격이 가능하다. 정식 동아리 승격은 공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8조(등록 요건의 징계)

동아리 등록 요건 시 동아리 회원 중 유령회원이 적발된 경우 당일 등록심사에서 강등되며,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하다.

(단, 정동아리에서 가동아리로 강등되는 경우 다음 학기 가동아리 유지심사에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9조(동아리 자치공간 배정)

- 1항 동아리 방은 정식(등록)동아리의 자치 공간이며, 이 공간의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침해받지 아니한다. 단, 동아리 자치 공간을 타 동아리와 바꾸는 경우에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 2항 아래 사항에 특별한 사유
- 1) 인륜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2) 화재 문제, 성 문제, 폭행 문제 등 공대의 위상에 위해가 되는 경우
 - 2) 공과대학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 4)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2/3 이상의 운영위원회의 발의 또는 2/3 이상의 동아리연합회의의 발의가 있을 경우
- 3항 공대 학생회가 동아리 자치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대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 등록 동아리에게 배정하거나 공운위가 인정한 단위의 자치공간으로 배정한다.
- 4항 배정방법
- 공대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의 표를 얻은 동아리에게 자치공간을 배정한다. 단, 과반 수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위를 뽑아 2차 투표를 진행하며 과반수이상의 표를 얻은 동아리에게 배정한다. 만일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한다.
- 5항 자치 공간 반납
- 재등록이 거부된 동아리는 공고 후 10일 안에 동아리 자치공간을 정리해야 한다. 유예기간 후에 동아리실 안의 물건은 포기의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공대학생회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동아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동아리 연합 회의)

1항 구성

동아리 연합회의는 각 동아리 대표자와 공대 문화체육국장으로 구성된다.

2항 업무 및 권한

- 1) 동아리 제반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 3) 문화(체육)국장의 주관하에 월 2회 회의를 정례화한다.

3항 운영 및 소집

- 1) 회의는 학생회장, 문화체육국장의 요구 및 동아리 대표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단, 각 동아리 대표가 인정한 대리인의 참여도 가능하다.)
- 2) 임시 회의는 3일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4항 의결

재적인원의 2/3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1조(동아리 징계의 사유 및 조치)

1항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

- 1) 대표자 회의에 2회 연속 불참한 경우, 단 임원진 신분의 대리인 출석 인정
- 2) 제1장 2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 3) 공대학생회 및 과학생회, 공대동아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행한 경우
- 4) 학기에 1회 이상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5) 정기적인 모임을 하지 않는 경우

2항 징계에 준하는 사항

- 1) 동아리 목적에 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 2) 학기에 1회 이상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3) 정기적인 모임을 하지 않는 경우

3항 징계 절차

- 1) 제11조 1항, 제1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대 동아리 연합 회의에서 동아리 회장들의 동의를 얻어 공대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보고여부는 제 10조 4항에 의거, 의결로 결정)
- 2) 제11조 3항 1) 이외의 사안은 공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로 판정되는 경우 권고 및 경고 사항을 결정한다.(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면 결정은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4항 징계 효력

- 1) 권고 2회는 경고 1회에 준한다.
- 2) 경고 2회는 제명안건에 회부되며 자치공간을 폐쇄한다.

5항 징계의 발효

- 1) 확정된 징계는 공대 학생회장이 이를 3일 이내로 공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 2) 징계를 받은 동아리는 공표 후 5일 이내로 공대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 이의신청은 공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음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동아리 활동보고)

- 1항 가등록 동아리를 제외한 공대동아리는 매학기 동아리 인준심사 회의 때 전학기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 2항 활동보고는 전 학기 활동내역 다음 학기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한다.
- 위의 경우 공대학우 누구나 공대학생회에 동아리에 대하여 건의 할 수 있으며 이때 공대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4장 관리

- 제13조(관리)** 공대동아리의 관리는 공대학생회가 책임을 지고 관리가 부득이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한다.